

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6. 7.

과)

제 출 자 : 하남시장(주택

1. 제안이유

-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‘소형 주택’을 ‘아파트형 주택’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주택법 시행령」 및 「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적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소형주택’을 ‘도시형 생활주택’로 개정함(안 제3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근거 법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